

투자자문일임계약 사전 서면자료

- ◎ 본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7조(계약의 체결), 동법 시행령 98조(계약의 체결), 금융투자업규정 제4-73조(서면자료 기재사항) 등에 의거,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.
- ◎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서(안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굿모닝투자일임(주)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
서면자료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 수령인 _____ (인)